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176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공주시 D 대 728㎡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19.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5,182,0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82,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공주시 D 대 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19.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65617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1. 'C는 원고에게 6,641,141원 및 그 중 4,949,577원에 대하여 201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1. 7. 9.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의 청구원인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20. 7. 1. 기준 이 사건 양수금 원리금 채권액 합계는 15,182,076원이다. 1)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이후 경과

이 사건 토지는 E 소유였는데, E는 상속인으로 C, F 및 피고를 두고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C, F 및 피고는 2017. 3. 19.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2017. 5. 19.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자신의 상속분인 1/3 토지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서 무자력 상태였다.2)

피고의 단독 소유 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6. 1. G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9. 5. 7.에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5.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7. 1. 1. 기준 ㎡당 67,400원이고, 2018. 1. 1. 기준 ㎡당 71,400원이며, 2019. 1. 1. 기준 ㎡당 73,300원이고, 2020. 1. 1. 기준 ㎡당 75,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였던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포기한 것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2016. 9. 12. 이 사건 토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해 왔고 2017. 4. 7.에는 세대주가 되었으므로, C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대부회사인 원고로서는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가

마쳐진 2017. 5. 19.경 내지 그 직후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7. 3. 19.경 있었고, 그에 따른 피고 단독 소유 등기는 2017. 5. 19.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이나 그에 기한 피고 단독 소유 등기라는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조차 각 그 당시에 그 직후에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 등을 알았는지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여분, 특별수익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 전에 상당한 재산을 C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특별수익이 없었음에도 망인을 부양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고려하면 C는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인 피고가 제출한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C의 특별수익 등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 상속분인 1/3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선의의 제3자로 판단되는 H조합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2020.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개별 공시지가는 18,248,533원(=㎡당 개별 공시지가 75,200원 X 728㎡ X 1/3, 원 미만 버림)인데, 2017. 1. 1.부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시가는 적어도 위 18,248,533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인되고,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 채권액은 이에 미치지 않는 15,182,076원이므로, 위 15,182,076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라. 소결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5,182,076원의 범위 내에서 사행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182,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차영민

1) 원고의 2021.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와 C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한 바 있다.